



의안번호	제 2015 - 18 호
보 고 연 월 일	2015. 5. 1. (제64차 정기회의)

보
고
안
건

전문위원 업무보고

제 출 자	수석전문위원
-------	--------



목 차

I. 제89차 전체 회의	1
1. 일시·장소	1
2. 참석자	1
3. 주요 안건	1
4.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논의결과	1
II. 향후 일정	5

별첨 김세종, “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”
김현아, 오기찬, “상습장물 양형기준 수정 관련 검토”

I. 제89차 전체회의

1. 일시·장소

- 일시 : 2015. 4. 6.(월) 15:00 ~ 18:0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2. 참석자(13명)

- 수석전문위원, 강수진, 김현아, 김세중, 김혜정, 노수환, 박지선, 범현, 오기찬, 이진국, 최준혁, 최진녕, 황병헌 전문위원
- 운영지원단장(간사)

3. 주요 안건

- 식품·보건,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¹⁾
-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

4.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논의 결과

가. 양형기준 수정 논의의 배경

- 헌법재판소 2015. 2. 26. 선고 2014헌가16·19·23(병합) 결정 ⇒ ‘상습장물’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특정범죄가중법’이라 함. 2010. 3. 31.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) **제5조의4 제4항**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‘취득’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
- 장물범죄 양형기준 중 ‘상습·누범장물’ 유형은 ‘특정범죄가중법 제5

1) 양형위원회 제63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였음

조의4 제4항'과 '형법 제363조'로 구성된 '상습장물'과 '특정범죄가중
법 제5조의4 제5항(제4항)'으로 구성된 '누범장물'로 구성되어 있음

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'상습장물'의
법정형에 큰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, '상습·누범장물' 유형에 대한 수
정 여부를 검토하게 됨

나. '상습·누범장물' 유형 권고 형량범위 설정 경위

- 구성요건의 법정형

- '상습장물' ⇒ 형법 제363조(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), 특정범죄가
중법 제5조의4 제4항(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)
- '누범장물' ⇒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, 제4항(무기 또는 3
년 이상 징역)

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(상습 강도·절도죄 등의 가중처벌)

- ①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상습적으로 「형법」 제333조·제334조·제336조·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④ 「형법」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⑤ 「형법」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·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.
-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.

■ 형법 제363조(상습범)

-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
- 특정범죄가중법에 '상습장물'을 별도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와 대
부분의 '상습장물'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
하여, 특정범죄가중법상 '상습장물'의 법정형과 실무례를 기준으로
형량범위를 정하되, 형법상 '상습장물'에 대한 고려가 형량범위 설

정에 일부 반영되도록 함

- 특정범죄가중법상 ‘상습·누범장물’과 법정형이 동일한 ‘일반상습·누범절도’ 유형과 동일하게 설정하되, 감경영역의 하한은 형법상 ‘상습장물’의 법정형 하한(1년)을 포섭할 수 있도록 다소 하향함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일반상습·누범절도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상습·누범장물	1년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
다. 논의 결과

- 아래와 같은 이유로, ‘상습·누범장물’ 유형에서 ‘상습장물’에 해당하는 형법 제363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을 모두 제외하고, 대유형의 명칭을 ‘누범장물’로 변경하며, ‘누범장물’의 권고 형량범위를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일치

(1)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‘상습장물’ 제외 ⇒ 의견일치

-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 설정 대상에서 제외
 - ‘상습장물’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취지상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전부 제외함이 타당
- ‘상습장물’에 대한 적절한 권고 형량범위 제시 곤란
 - 형법 제363조를 설정 대상에 존치하고 ‘상습장물’에 대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 - 그러나, ‘상습장물’에 대한 종전 양형실무는 특정범죄가중법의 법정형 하한(3년)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것이므로, 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기초로 형법 제363조(1년 이상 10년 이하)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 ⇒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만한 양형통계분석 결과가 없는 상태로서 적절한 권고 형량범위 제시 곤란

○ 법률 개정 시 양형기준 재차 수정 필요

- 형법 제363조의 법정형을 최종적인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기 어렵고, 향후 법정형이 변경될 경우 다시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함

○ '일반상습·누범절도' 유형 양형기준 수정과 함께 논의될 필요

- '상습·누범장물'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기초가 된 '일반상습·누범절도' 유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의 '일반상습·누범절도'만을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, '일반상습절도'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도 2015. 2. 26. 위헌결정이 선고됨
- 형법상 '일반상습절도'(제332조)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'일반상습·누범절도' 유형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, 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또한 수정할 필요 있음
- 절도범죄는 장물범죄의 대표적 본범에 해당하므로, '상습장물'에 대한 양형기준은 '일반상습절도'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할 때 함께 논의함이 바람직함

○ 따라서, '상습·누범장물' 유형에서 '상습장물'에 해당하는 형법 제363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을 모두 제외하고, 향후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시 반영하기로 함

○ 그 밖에 '상습장물'의 존치를 전제로, ① '상습·누범장물'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특별감경인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향 수정하는 방안, ② '상습·누범장물' 유형을 '상습장물'과 '누범장물'로 분리하고 '상습장물'에 대하여 별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안, ③ '상습·누범장물' 유형에서 분리된 '상습장물'을 '일반장물' 유형에서 포섭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음(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 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)

(2) 대유형 명칭 '상습·누범장물'에서 '누범장물'로 변경 ⇒ 의견일치

○ '상습장물'에 해당하는 형법 제363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4항이 모두 제외되어,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(제4항)으로

구성된 '누범장물'만이 남게 되었으므로, '누범장물'로 대유형 명칭 변경

(3) '누범장물' 유형 권고 형량범위 수정 ⇒ 의견일치

- '상습·누범장물' 유형 감경영역의 하한은 '상습장물' 중 형법 제363조의 법정형 하한(1년)을 포섭하기 위하여 1년6월이 아닌 1년으로 설정된 것이므로, 법정형 하한이 3년인 '누범장물'만 남게 된 이상, 감경영역의 하한은 1년6월로 수정함이 타당함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상습·누범장물	1년6월 - 3년	2년 - 4년	3년 - 6년

II. 향후 일정

- 전문위원 제90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